M - 110 - 2012

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1996년 12월 4일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
- 1996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IRI (INDUSTRIAL RISK INSURERS) 기준
 - KS B 0142 (ISO 2372)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 제88조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회전기계의 진동감시 기술기준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절 제88조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 의 규정에 따라 회전기계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하는 진동감시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기계에서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진동감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진동 격렬도"란 진동의 격렬한 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기계의 진동격렬도는 베어링이나 부착대 위의 지정된 점에서 측정한 진동속도의 rms 값에 대한 최대값을 말한다.
 - (나) "진동 속도의 rms값"이란 진동속도를 측정 표현하는 실효값으로 제곱평 균값의 제곱근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진동감시 주기 및 방법

4.1 기계의 분류 원칙

M - 110 - 2012

- (1) 각 기계별로 적용되는 진동감시 주기 및 방법은 기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된다.
- (2) 기계의 중요도는 그 기계의 가격, 생산가치, 고장의 중대성에 따라서 결정된다.

4.2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계

- (1) 10.000 HP (7460 kw) 이상의 동력을 가지는 기계
- (2) 고장 발생시 전공정에 영향을 주는 기계
- (3) 고정형의 온라인 연속진동감시장치(ON-LINE CONTINUOUS VIBRATION MONITORING SYSTEM)를 설치하여 계속적인 상태감시를 한다.
- (4) 진동 격렬도에 따른 경보치 및 차단치를 정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고, 차단되도록 한다.

4.3 중요도가 높은 기계

- (1) 1.000 HP (746 kw) 이상의 동력을 가지는 기계
- (2) 고장 발생시 매일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계
- (3) 고장이 위험을 초래하거나, 위험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기계
- (4) 온라인 연속진동감시장치나 온라인 주기적진동감시장치(ON-LINE PERIODIC VIBRATION MONITORING SYSTEM)의 설치가 권장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최소 1주일 단위로 진동치를 측정하고 경향 관리를 한다.

4.4 기타 기계

- (1) 100 HP (75 kw) 이상의 동력을 가지는 기계는 온라인 주기적진동감시장치의 설치가 권장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진동치를 측정하고 경향관리를 한다.
- (2) 기타의 모든 기계는 최소 분기단위로 진동치를 측정하고 경향관리를 한다.
- (3) 500 HP (373 kw) 이상의 동력을 가지는 기계는 년간단위로 시동, 정지, 무부하, 정상부하, 과부하 운전시의 진동상태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한다.

5. 진동 제한치 설정 예시

M - 110 - 2012

5.1 진동 제한치 설정

- (1) 진동 제한치는 진동 격렬도로 나타내며 기기별로 미리 설정한다.
- (2) 진동 격렬도는 진동 속도의 rms 값 (단위 mm/s)로 표시한다.
- (3) 진동값의 표현은 진동변위의 경우 PP값(PEAK TO PEAK값, 단위 micro meter pp 또는 mils pp), 진동속도나 가속도의 경우 양의극대값 (ZERO TO PEAK, 속도단위 mm/s 또는 in/s, 가속도 단위 g 또는 m/s²)이나 rms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.
- (4) 미끄럼 베어링의 경우에는 축진동을 직접 관측하고 유막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진동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구름 베어링이나 소형기계의 미끄럼 베어링의 경우에는 축진동이 거의 대부분 효과적으로 베어링하우징에 전달되므로 속도 및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.
- (5) 진동 측정 장소는 베어링의 종류에 따라 기계의 설치부분 구조물이나 베어링 부분 또는 베어링하우징에서 측정한다.
- (6) 설정된 진동 제한치는 경험에 의하여 최종의 올바른 수치를 얻어야 한다.

5.2 기계의 분류

- (1) I급: 보통 운전 조건하에서 전체 기계 중 일부를 이루는 구성요소 (15kw 이하의 일반용 전동기)
- (2) Ⅱ급: 특별한 기초를 갖지 않는 중형기계(15~75kw의 전동기) 특별한 기초 위에 견고히 설치된 기계(300KW 까지)
- (3) Ⅲ급: 대형원동기 또는 대형 회전기계로서 강기초 또는 상당히 높은 강성을 가진 무거운 기초위에 설치된 기계
- (4) IV급 : 대형원동기 또는 대형 회전기계로서 비교적 유연한 기초위에 설치 된 기계

5.3 평가 구역

- (1) A구역: 새로이 설치된 기계의 진동
- (2) B구역: 제한되지 않고 오래동안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계의 진동
- (3) C구역: 오래동안 연속적으로 운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적당한 기회에 보수를 하기 전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운전할 수 있는 기계의 진동

M - 110 - 2012

(4) D구역: 손상을 입고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 기계의 진동

5.4 운전 제한

5.4.1 경보

- (1) 진동이 설정된 제한치에 도달되거나 심각한 변동이 발생되면 경보를 발하게 한다.
- (2) 경보가 발해지면 진동변화의 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조사기간 동안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.
- (3)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 값 또는 C구역 아래쪽 값을 선택한다.
- (4)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의 1.25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(5) 진동 크기의 변화가 B구역 상한치의 25%를 초과할때에도 경보의 설정이 필요하다.

5.4.2 차단

- (1) 기계가 손상을 입어 더이상의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진동크기에 설정한다.
- (2) 차단치가 초과되면 즉시로 진동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기계를 정지 시킨다.
- (3) 차단치는 기계의 기계적인 완벽함과 관계되며 비정상적인 동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기계가 특별히 설계되었는가에 따른다.
- (4) 일반적으로는 차단치는 C구역이나 D구역내에서 설정한다.
- (5) 차단치는 C구역 상한치의 1.25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5.5 진동 평가 구역의 예시

표 1에서 제시하는 구역범위를 참조하여 설정치를 결정한다.

<표 1. 진동 격렬도의 구분범위와 적용보기>

진동 격렬도의 범위	기계분류에 대한 평가구역			
속도의 rms 값(mm/s)	I 급	Ⅱ 급	Ⅲ 급	IV 급
0.28	A	A	A	A
0.45				
0.71				
1.12	В			
1.8		В		
2.8	С		В	
4.5		С		В
7.1	D		С	
11.2		D		С
18			D	
28				D
45				
71				

(KS B 0142 및 ISO 2372 : 회전속도 10~200 rev/s 진동수 10~1000HZ로 운전되는 계의 평가기준)

5.6 새로운 기계나 경험이 없는 기계에 대한 적용 예

- (1) 8mm/s 이상의 진동속도를 가진 기계는 조사가 요구된다.
- (2) 설정된 진동 제한치의 2배 이상 진동이 증가되는 기계는 조사가 요구된다.
- (3) 16mm/s 이상으로 진동속도가 증가되는 기계는 정지가 요구된다.
- (4) 설정된 진동 제한치의 4배 이상 진동이 증가되는 기계는 정지가 요구된다.

6. 진동감시 절차

6.1 목표 집단의 선정

- (1) 설비의 모든 기계를 진동감시 대상으로 하는것이 권장된다.
- (2) 일반적인 선정은 아래의 기계들이 대상이 된다.

M - 110 - 2012

- 설비 안전에 중요한 기계
- 생산에 중요한 기계
- 가격이 높은기계 또는 교환이나 보수가 어려운 기계
- (3) 설비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중요설비를 빠짐없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대규모 설비는 그룹별로 나누어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다.

6.2 감시장치의 선정

- (1) 적용 가능한 감시의 수준을 정하고 알맞는 감시 및 분석장치를 선택한다.
- (2) 기계 제작자 및 진동감시장치 제작자들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한다.

6.3 감시 작업자 교육

- (1) 진동감시장치 제작자들이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.
- (2) 가능한 감시절차 수립의 전반기에 교육을 받는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진동 감시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.
- (3) 대규모 설비에서는 측정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의 교육도 고려한다.
- (4) 생산관리 담당자도 진동감시에 대한 정보, 목표, 성능에 관한 사항을 알아 야 설비가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.

6.4 진동제한치 설정

- (1) 진동제한치의 설정 또는 진단·분석은 기계제작자의 권고치 또는 진동감시 장비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.
- (2)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5항 진동제한치 설정예시의 권고사항을 따른다.

6.5 진동 해석자료의 확립

- (1) 진동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계상태 정보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.
- (2) 기계상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거나 준비되어야 한다.
 - 구동기계 및 종동기계의 형식
 - · 속도 가속기, 감속기, 기타 관련설비(기어, 벨트, 체인, 브레이크, 클러치 등)에 관한 자료

M - 110 - 2012

- 베어링, 커플링의 형식
- · 진동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상으로 증명된 주위의 상태, 예를들면 옥외에 설치되어 기후에 취약한 설비의 진동치와 정렬상태
- 측정을 실시하는 위치
- 초기 진동치

6.6 감시주기 설정

- (1) 가능한 자주 측정하는것이 권장된다.
- (2) 주기의 조정은 경험에 의하여 한다.
- (3) 중요하고 위험한 기계는 연속적으로 감시하는것이 좋다.

6.7 개별 측정위치

기계의 진동 측정은 일정한 위치와 방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, 표식, 이름표 등으로 표시를 한다.

6.8 기본값 측정

- (1) 초기 진동 측정치는 초기값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하다.
- (2) 초기값은 미래의 고장진단의 기본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.
- (3) 작은 기계에서는 진동속도의 rms값 또는 양의 극대값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.
- (4) 중요하고 위험한 설비에서는 시동, 정지, 무부하, 정상부하, 과부하, 위험속 도 운전시의 진동상태를 측정하여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

6.9 수집, 해석, 자료의 기록

모든 자료는 각 기계별로 정기적으로 측정·기록하여 둠으로써 미래의 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.